



협정번호 : 1993-052

공제업무대리취급협정 인증서

인 가 번 호 : 03-201

조 합 명 : 인천대건신협

협정체결일 : 1993년 11월 2일

위 조합은 신협중앙회와의
공제업무대리취급협정에 의거하여 신협공제상품의
판매 등 제반업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

2021년 3월 25일

신협중앙회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

